

「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3년 6월 27일

나. 제 출 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3년 6월 28일

라. 상정일자: 2023년 7월 6일

제2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환경교통국장 박 은 희

나. 제안이유

- 농작물 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, 피해 조사를 읍·면·동에 위임하여 업무 추진 방법을 개선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피해보상액 산정기준 신설(안 제6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)

- 피해 신고 및 조사 방법 변경(안 제7조)
- 피해보상절차 일부 변경(안 제8조제3항)

## 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,
  -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용 덕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시 보상액 산정기준을 자구 노력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우리 시의 조례안을 보면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보상액을 감액하여 차등 적용하였으나, 타 시·군에서는 첫 지급 시부터 피해예방시설 설치 정도에 따라 보상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.

- 또한, 피해보상금 지급기간을 당초 7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변경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